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21. 3. 9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홍복조 의원 외9인(김화덕, 박정환, 안대국, 이영빈, 이성순, 김태형, 배지훈, 안영란, 박재형)
- 발의일자: 2021. 2. 22.
- 회부일자: 2021. 2. 25.
- 상정 및 의결: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3. 9.)

## 2. 제정이유

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과 아동 위원협의회를 두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아동위원의 구성, 임무, 임기(안 제2조~안 제4조)
- 다. 아동위원 협의회(안 제5조)
- 라. 협의회의 회의(안 제6조)
- 마. 수당 등(안 제7조)
- 바. 운영(안 제8조)

#### **4. 참고사항**

- 관계법령
  - 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2. 22. ~ 2021. 3. 5.) 결과: 의견 없음

#### **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**

- 현행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상위법”) 제14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에 “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”는 명예직 ‘아동위원’을 위촉하여 일련의 아동 복지 행정을 하도록 규정.
- 본 조례안은 위 상위법 규정에 맞춰, 달서구 ‘아동위원’ 운영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조례 제정 취지 및 규정된 각 조문 내용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안 제6조제2항의 “~위원장~” 자구는 “~회장~” 자구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**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#### **7. 심사결과: 수정가결**

#### **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**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“위원장”을 “회장”으로 한다.

### <수정안 조문 대비표>

조례안	수정안
제6조(협의회의 회의) ① (생략)  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<u>위원장</u>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 ③ ~ ④ (생략)	제6조(협의회의 회의) ① (조례안과 같음)  ② ----- ----- <u>회장</u> ----- ----- ③ ~ ④ (조례안과 같음)